

● 제28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492, 2494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18. 5. 31.

다. 회부일 : 2018. 6. 11.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066,155백만 원

○ 징수결정액 : 1,069,156백만 원

○ 실제수납액 : 1,062,939백만 원

○ 미수납액 : 6,218백만 원

○ 결손처분 : 없음

○ 다음연도 이월액 : 6,218백만 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4%(전년도 99.5%)임.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 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066,155	1,069,156	1,062,939	6,218	99.4
여성가족정책실	1,066,155	1,069,156	1,062,939	6,218	99.4
세외수입	19,937	47,158	40,940	6,218	86.8
경상적세외수입	123	729	614	115	84.2
재산임대수입	123	129	129		100.0
공유재산임대료	123	129	129		100.0
사용료수입		5	5		100.0
기타사용료		5	5		100.0
사업수입		17	17		100.0
기타사업수입		17	17		100.0
이자수입		579	464	115	80.1
기타이자수입		579	464	115	80.1
임시적세외수입	19,815	46,429	40,326	6,102	86.9
기타수입	19,814	46,429	40,326	6,102	86.9
불용품매각대		5	5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17,252	43,969	37,886	6,082	86.2
그외수입	2,562	2,455	2,435	20	99.2
보조금	688,137	665,255	665,255		100.0
국고보조금등	688,137	665,255	665,255		100.0
국고보조금등	688,137	665,255	665,255		100.0
국고보조금	655,672	635,600	635,600		100.0
기금	32,465	29,655	29,655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8,081	356,743	356,743		100.0
보전수입등	1,956	3,635	3,635		100.0
전년도이월금	1,956	3,635	3,635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56	3,635	3,635		100.0
내부거래	356,124	353,108	353,108		100.0
전입금	356,124	353,108	353,108		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6,124	353,108	353,108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2,237,431백만 원
- 예산증감 : 7,210백만 원
- 예산현액 : 2,244,641백만 원
- 지출액 : 2,176,904백만 원
- 이월액 : 4,853백만 원
- 불용액 : 62,884백만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8%(전년도 1.2%)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 원)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62,884	300	0	57,545	5,039	0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2,244,641	2,176,904	4,853	62,885	2.8
사업예산계	2,239,861	2,172,478	4,852	62,531	2.8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정책담당관)	83,454	78,519	3,298	1,637	2.0
여성경제력 강화	49,242	45,952	2,608	682	1.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516	1,404	0	112	7.4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2,696	31,163	690	843	2.6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보육담당관)	1,907,851	1,863,134	-	44,717	2.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722,284	1,691,796	0	30,488	1.8
보육시설 확충	176,028	161,880	0	14,148	8.0
맞춤형 보육 확대	9,539	9,459	0	81	0.8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 복지 증진(가족담당관)	226,123	209,521	1,374	15,228	6.7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5,929	5,884	0	45	0.8
저출산 대책 추진	14,302	14,279	0	24	0.2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65,276	156,705	222	8,350	5.1
한부모 가족 지원	40,615	32,654	1,153	6,809	16.8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862	20,778	180	904	4.1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12,407	12,026	0	381	3.1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9,455	8,752	180	523	5.5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센터)	571	526	-	45	7.9
아동복지센터 운영	571	526	-	45	7.9
일 반 예 산 계	4,780	4,426	-	354	7.4
행정운영경비	631	529	-	102	16.2
재무활동(국고반환금)	4,149	3,897	-	252	6.1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4건 1,129백만 원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17건 16,209백만 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 4건 2,843백만 원

- 명사이월 : 2건 2,010백만 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86개 사업 660,216백만 원 집행

(단위 : 백만 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 = ① - ② - ③
688,137	665,255	660,216	-	5,039

3. 기금결산

- 성평등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24,135백만 원
 - 전년도말 조성액 : 24,086백만 원
 - 당해년도 조성액 : 963백만 원
 - 당해년도 사용액 : 914백만 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 24,135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액 ①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⑤ = ① + ②
		계 ② = ③ - 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성평등기금	24,086	49	963	914	24,135

4. 채권현재액 : 29,474백만 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93,563m² 76,628백만 원,
 - 토지 375,196m² 218,550백만 원,
 - 기타 2건 560백만 원,
 - 총 295,738만 원 상당의 금액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310,888	1,333	16,483	295,738
행정 재산	계	310,241	1,333	16,483	295,091
	공용재산	202,475		16,483	185,992
	공공용재산	107,766	1,333		109,099
일반재산		647			647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84개,
현재액 414백만 원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수량-개, 금액-천 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85	2	0	2	3	0	3	84
	금액	410,669	50,000	0	50,000	46,392	0	46,392	414,277
일반회계	수량	85	2	0	2	3	0	3	84
	금액	410,669	50,000	0	50,000	46,392	0	46,392	414,277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62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692억 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조 62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원으로, 징수율은 99.42%로 나타남.

〈표 1-1〉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
2017년	1,066,155	1,069,156	1,062,939	6,218	99.42
2016년	1,062,799	1,065,219	1,059,915	5,303	99.50
2015년	1,010,185	1,071,945	1,062,412	9,533	99.11
2014년	951,689	962,039	943,904	18,135	98.11
2013년	829,852	845,634	844,204	1,430	99.83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경우, 전체 세입의 64.5%(6,881억 원)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3.6%(3,581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2017회계연도 주요 세입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1,066,155	100.00	1,062,799	100.00	1,010,185	100.00	951,689	100.00	829,852	100.00
세외수입	19,937	1.87	22,322	2.10	6,065	0.60	7,272	0.76	278,698	33.58
보조금	688,137	64.54	657,419	61.86	636,670	63.03	642,127	67.48	518,261	62.4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8,081	33.59	383,058	36.04	367,450	36.37	302,291	31.76	-	-
지방 교부세				-	-	-	-	-	32,894	3.96

2)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추이 및 특징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 추이(표 1-1)를 살펴보면, 2013년 8,299억 원이던 것이 2017년 1조 662억 원으로 28.5% 증가함.
-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전년대비 14.7%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무상보육정책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증가와 누리과정 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2014년 이후에는 각각 2015년 6.2%, 2016년 5.2%, 2017년 0.3%로 그 증가폭이 완연히 줄어들었음.

- 한편, 최근 5개년 동안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원천 추이(표 1-2)를 살펴보면,
 -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절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5,183억 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6,881억 원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동안 32.8% 증가하였음.
 - 한편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새로운 세입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과거 만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통해 교부되어 왔던 것이, 2013년 이후부터는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내부거래로 전입되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결과임.
 - 이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2014년 3,023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581억 원으로 18.5%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1.8%에서 2015~2016년에는 각각 36%대로 늘어났다가, 2017년에는 33.6%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나.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1)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표 1-1참조)은 99.4%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 간의 연도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14년 181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15년 그 절반 가량인 95억 원, 2016년에는 53억 원까지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 다소 증가하여 62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미수납액의 그 절대액으로 볼 때 2017년 기준 62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인바,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필요

- 상기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요 예산항목은 관항목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외 수입’ 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특히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임.
- 2017년의 경우,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173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이후 실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2.6배에 해당하는 440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79억 원에 그치면서, 총 61억 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됨. 따라서 징수율은 86.2%로 기록됨.

〈표 1-3〉 시·도반환금 수입 세입 조서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징수율 B/A(%)
임시적세외수입	19,815		19,815	46,429	40,329	6,102	6,102	86.86
기타수입	19,815		19,815	46,429	40,329	6,102	6,102	86.86
불용품매각대				5	5			100.00
사도비반환금수입	17,252		17,252	43,969	37,887	6,082	6,082	86.17
그외수입	2,562		2,562	2,455	2,435	20	20	99.18

- 시·도비반환금의 대부분은 보육료 등 주로 보육분야 시비보조금과 관련되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의 미수납 총액(62억 원) 가운데 97.8%(61억 원)가 바로 ‘시·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육분야 예산에 대한 자치구 회수 반환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반환 요구를 통해 적극적 징수 노력 및 징수 대책이 요구됨.

3) 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등 과학적 추계 철저 필요

-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예산 계획상 예산추계를 통한 산정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을 말함.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가능한 세출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산세입 추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임.
-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다소 발견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도비반환금수입’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73억 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440억 원으로 2.5배에 달하며, 이들 간의 차액은 무려 267억 원에 이르고 있음(표 1-3 참조), 이는 해당 예산액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추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임.
- ‘시·도비반환금’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반환금 및 미수납금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전 결산 심사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 이후 이와 관련된 보육료등의 반납금은 2015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세입추계 철저 및 반환금 회수를 위한 철저한 예산운용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이전부터 지적해 왔던 바, 앞으로 세입추계 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면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2,374억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2조 2,446억 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2조 1,769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49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29억 원으로 기록됨. 이에 따른 불용율은 2.8%로 나타남.

〈표 2-1〉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액비율 B/A(%)
2017	2,237,431	2,244,641	2,176,904	4,853	62,884	2.80
2016	2,214,809	2,219,517	2,171,923	7,210	40,384	1.82
2015	2,099,712	2,100,756	2,074,593	2,070,906	25,142	1.20
2014	1,892,131	1,893,000	1,875,546	0	17,454	0.92
2013	1,877,721	1,877,771	1,857,422	712	19,637	1.05

2)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 및 특징

- 세출결산 추이(표 2-1 참조)를 예산현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당시 1조 8,778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조 2,446억 원으로, 총 3,669억 원이 증액된 바, 같은 기간 동안 19.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세출 예산의 증가는, 2015년~2016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제도가 동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제도로 확장됨에 따라 이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며, 동 제도가 안착된 2014년 이후부터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불용율은 2.8%로 이는 전년대비 약 1%p가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불용율을 나타냈음.
- 불용률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각각 135억 원, 102억 원이 늘어나 총 237억 원의 불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불용율은 2014년 한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6년에는 0.62%p, 2017년에는 0.98%p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용율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3) 최근 5년간, 예산변경 추이

-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각종 예산변경(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사용)이 발생한 건 수는 총 21건으로 나타났고, 20%이상 불용율을 나타낸 사업은 총 16건으로 나타남.
- 예산변경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최근 5년 간 각종 예산변경 추이

(단위 : 백만 원, 건)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업 및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사용		불용 (20%상)	
	사업수	예산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97	2,244,641	-	-	4	1,129	-	-	17	16,209	-	-	16	8,381
2016	140	2,219,517	-	-	11	10,236	-	-	6	1,501	-	-	5	5,627
2015	154	2,100,756	-	-	14	12,799	30	63,247	17	9,399	1	1,043	10	3,077
2014	114	1,892,131	-	-	23	783	-	-	7	364	3	155	9	1,389
2013	155	1,877,770	-	-	31	86,481	-	-	17	4,031	-	-	11	2,118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변경 사항의 특징은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변경사용은 격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2016년까지는 각종 예산변경 건수와 금액 모두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7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15년 62건 → '16년 17건 → '17년 21건).

- 그리고, 2017년 불용율 20% 이상인 사업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금액면에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이나, 다빈도 예산 변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2017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2017회계연도 불용율을 부서별로 구분해보면, <표 2-3>과 같음.

<표 2-3> 부서별·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7					2016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금액	불용율	금액	불용율
합계	2,244,641	2,176,904	2,843	62,884	2.80	40,383	1.82
여성정책담당관	85,301	80,200	3,298	1,803	2.11	3,518	3.63
보육담당관	1,908,290	1,863,563		44,727	2.34	28,941	1.53
가족담당관	228,167	211,416	1,374	15,376	6.74	7,188	3.4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104	21,015	180	909	4.11	642	3.13
아동복지센터	779	710		69	8.82	94	11.62

- 여성정책담당관은 2.11%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대비 불용률과 불용액이 각각 1.52%p, 17억 원이 감소하였음.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불용율과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관 예산이 전체 실국 예산의 85%에 차지하고 있는 보육담당관의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불용율은 2.34%로 나타났음.
- 한편,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은 각각 4.11%, 6.74%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불용율 2.80%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 바, 특히 가족담당관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3.3%p가 늘어난 것임.
- 아동복지센터의 불용율은 8.82%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용율을 보임. 다만 2015년에 14.3%, 2016년 11.62%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복지센터의 불용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내역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사항으로, 전용내역, 변경사용 내역, 1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을 제시하면 아래 <표 2-4>부터 <표 2-7>과 같음.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은 없음.

〈표 2-4〉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증	
◇ 총 4건			1,129,070	1,129,07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98,400	598,400		○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사업 예산을 당초 자치구 집행에서 시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전용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149,886		598,400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342,350	94,000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관리비	56,967		94,00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39,143,568	290,588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의 무부담 비율 준수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83,172		290,58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200,000	146,082		○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추가교부금액에 매칭되는 시비확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3,794,974		146,082	

〈표 2-5〉 2017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사유
			감	증	
◇ 총 17건			1,500,866	1,500,86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경상)(국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40,000	15,000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차량 운영이 가능하여 더 긴급한 기관에 차량구입비 지원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5,00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경상)(국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5,000	25,000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차량 운영이 가능하여 더 긴급한 기관에 차량구입비 지원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5,000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사유
			감	증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83,925	15,465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업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등 지원사업) 변경(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변경사용)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지원(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484,005		15,465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22,729	5,706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업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등 지원사업) 변경(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변경사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민간위탁금	625,266		5,706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17,023	5,598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업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등 지원사업) 변경(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변경사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833,661		5,598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11,425	27,500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업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등 지원사업) 변경(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변경사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국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773,576		27,50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치단체자본 보조	352,000	352,000		○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아' 구축사업 예산을 당초 자치구 집행에서 시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예산변경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 득비			352,00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민간위탁금	631,560	12,000		○ 신규 세부사업 부대비용, 치료 동행, 돌봄비용(국비) 설치에 따라 사업비 변경사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부대비용, 치료동행, 돌봄비용(국비)	민간위탁금			12,00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056,880	240,000		○ 신규 세부사업 부대비용, 치료 동행, 돌봄비용(국비) 설치에 따라 사업비 변경사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부대비용, 치료동행, 돌봄비용(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40,000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99,644,389	5,045,367		○ 국고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추가 확보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41,597,438		5,045,367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사유
			감	증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4,599,022	9,873,310		○ 국고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가확보
영유아 보육료(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8,425,478		9,873,310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6,000	3,087		○ 부모모니터링단사업의 시도별 수탁사업비용분담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0		3,087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예방및학대피해아동보호(국비)	민간위탁금	292,270	36,000		○ 아동발달지원계좌 2017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매칭시비 보조금 변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39,200		36,000	
아동급식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802,653	10,500		○ 보건복지부 사업비 변경내시로 시비 확보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3,838		10,500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예방및학대피해아동보호(국비)	민간대행사업비	505,000	505,000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이호조사업 구조화 오류 정정을 위한 예산 변경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국비)	민간대행사업비	0		505,00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200,000	15,000		○ 지원대상자증가로국비변경내시에 따른시비매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90,000		15,000	
가족역량강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8,140	22,000		○ e나라도움시스템도입으로 기존 「가족역량 강화사업」의 세부사업이었던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이 분리되어 확정내시 통보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22,000	

〈표 2-6〉 불용액 10%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 불용율 20%이상 사업, 총 16건 / 불용율 10%이상 사업, 총 29건-						
1	성평등주간기념행사 (舊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300,000	259,265	40,735	13.58	○ 홍보물 및 소모품 제작 예산절감하였고, 홍보부스 운영예산은 기금 사용
2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2,600,000	2,176,656	423,344	16.28	○ 혁신파크 준공 예정일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발생
3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574,980	1,297,850	277,130	17.60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수당 및 여성공무원 워크숍 진행 후 집행잔액임
4	다양한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주민 참여)	1,000,000	805,200	194,800	19.48	○ 정책계획 시 수요예측 과다로 불용발생
5	여성복지시설 생활 여성 추가지원	940,000	706,350	233,650	24.86	○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현원기준으로 집행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국비)	26,480	0	26,480	100.00	○ 여성가족부 주거지원 LH, SH임대주택 임대차계약기간 미도래로 불용. ○ 임대차계약기간이 8개호 중 7개호 (2016.10.01. ~ 2018.09.30.), 1개호 (2017.01.01. ~ 2018.12.31.)
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국비)	7,500,000	5,784,289	1,715,712	22.88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임 - 치료회복 프로그램 불용액 47,000,000원, 불용률 9.6%, - 의료비 불용액 124,571,150원, 불용률 47.1%
8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국비)	381,000	150,000	231,000	60.63	○ 프로그램 수행시설 공모와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한 것임
9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국비)	600,000	301,880	298,120	49.69	○ 시설 기능보강 실제 수요치에 대비하여 사전 예측치가 과다하게 설정되었음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300,000	1,053,266	246,734	18.98	○ 지원 대상자 사망(26명->22명)으로 집행액 감소
11	기본경비(여성)	2,791,880	2,157,119	634,761	22.74	○ 사무용품 및 인쇄비 집행잔액
12	반환금및기타(여성)	9,682,130	8,646,948	1,035,182	10.69	○ 과거 국비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반납액이 미달함
13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5,816,500	4,365,697	1,450,803	24.94	○ 심사기준표 신설 후 기준에 따라 선정 및 심사하여 적합한 마을공동체에 집행 및 교부
14	기본경비(보육)	571,980	474,660	97,320	17.01	○ 사무용품 및 인쇄비 집행잔액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15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135,000	111,000	24,000	17.78	○ 학술연구용역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6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895,800	710,039	185,761	20.74	○ 보건복지부의 당초 가내시 통보 이후, 확정(감액) 내시통보로 인해 예산차액이 발생함. (당초 50,000천 원→ 확정사업액34,032천 원)
17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국비)	2,562,700	1,287,060	1,275,640	49.78	○ 쉼터개소 지연(10월)으로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18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토요운영(국비)	5,967,350	4,428,611	1,538,739	25.79	○ 토요일 이용 아동 및 운영 센터 수 감소
1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우수 지역아동센터(국비)	9,691,200	2,794,974	6,896,226	71.16	○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 지역아동센터 기준 용역을 9월까지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우수센터 선정 완료
20	입양아동가족지원	47,636,610	37,907,623	9,728,987	20.42	○ 당초 입양아동가족지원 1,771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아동이 1,700명으로 감소
21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55,404,760	43,880,863	11,523,897	20.80	○ 국고보조사업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서 67개소 지원 예정이었으나, 실제 60개소 운영됨
2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4,838,000	28,386,945	6,451,055	18.52	○ 당초 1,200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아동 1,070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659,760	585,510	74,250	11.25	○ 용역계약 낙찰차액
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4,787,660	66,737,454	8,050,206	10.76	○ 생활인 574명 예상 하였으나, 예상보다 적은 518명 입소
2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9,420,000	164,818,794	44,601,207	21.30	○ 2015년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감소 →11,555가구('16년, 전년대비54%감소)→10,177가구('17년, 전년대비12%감소)
2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80,389,180	65,746,345	14,642,835	18.21	○ 2015년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 감소 →11,555가구('16년, 전년대비54%감소)→10,177가구('17년, 전년대비12%감소)
27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3,000,000	0	3,000,000	100.00	○ 해당 사업은 의원발의 사업으로 '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기 추진중인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처리함
28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2,000,000	1,533,800	466,200	23.31	○ 공모에 응시한 단체수가 저조하여 총 6개 단체 선정 지원 ※ 16년 7개 단체 지원
29	기본경비(외국인)	2,081,170	1,838,783	242,387	11.65	○ 사무용품 및 인쇄비 집행잔액

〈표 2-7〉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 총 31건						
1	안심귀가스카우트	3,855,197	3,706,495	148,702	3.86	○ 자치구에서 선발된 스카우트 대원 중 중도 포기자 인건비 불용액 등
2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6,060,508	5,689,035	371,473	6.13	○ 민간위탁금 21억 원중 불용된 1억 3천만 원은 계약심사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 설치·감리예산 37억 5천만 원중 불용된 2억 4천만 원은 시설 설치 관련 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임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경상)(국비)	2,557,729	2,404,349	153,380	6.00	○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잔액 등 보호시설운영 집행 잔액
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국비)	750,000	578,429	171,571	22.88	○ 의료비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5	반환금및기타(여성)	968,213	864,695	103,518	10.69	○ 과거 국비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반납액이 미달함
6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199,096,228	194,211,395	4,884,833	2.45	○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내시공문이 내려 옴에 따라 국고가 감액되어집행잔액 발생
7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40,849,415	40,421,920	427,495	1.05	○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내시공문이 내려 옴에 따라 국고가 감액되어집행잔액 발생
8	가정 양육수당 지원	284,725,712	263,002,900	21,722,812	7.63	○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내시공문이 내려 옴에 따라 국고가 감액되어 집행잔액 발생
9	영유아 보육료(보조)	629,839,021	629,454,133	384,888	0.06	○ 당초 교육청 추계대비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방과후 보육료 감액교부
10	누리과정 보육료	269,678,640	266,906,955	2,771,685	1.03	○ 서울시 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누리과정 대상인원이 당초 교육청 추계보다 감소함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
11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3,061,551	2,895,000	166,551	5.44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분 추가평성하였으나,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자가 감소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9,551,328	155,953,643	13,597,685	8.02	○ 보건복지부 예산 교부 시기가 늦어 자치구에서 명시이월이 불가
13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823,406	3,475,767	347,639	9.09	○ 안전관리관 공모사업에 '17년도 8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집행잔액 발생
14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581,650	436,570	145,080	24.94	○ 심사기준표 신설 후 기준에 따라 선정 및 심사하여 적합한 마을공동체에 집행 및 교부
15	아동 복지 시설 운영지원	69,991,522	66,858,913	3,132,609	4.48	○ 꿈나무마을아동 자연감소(70여명)에 의한 운영비등 집행잔액
16	아동 복지 시설 생활아동지원	4,964,230	4,570,886	393,344	7.92	○ 꿈나무마을아동 자연감소(70여명)에 의한 직업훈련비 등 집행잔액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17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국비)	256,270	128,706	127,564	49.78	○ 쉼터개소 지연(10월)으로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1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국비)	24,834,511	24,434,699	399,812	1.61	○ 휴폐업등 센터 발생
19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토요운영(국비)	596,735	442,861	153,874	25.79	○ 토요일 이용 아동 및 운영 센터 수 감소
2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우수지역아동센터(국비)	969,120	279,497	689,623	71.16	○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 지역아동센터 기준 용역을 9월까지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우수센터 선정 완료
2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4,569,600	4,280,233	289,367	6.33	○ 휴폐업등 센터 발생하여 목표치 대비 파견 교사수 감소
22	아동급식지원	21,792,153	21,538,015	254,138	1.17	○ 예산인원 대비 실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방학기준 급식예산인원 41,000명 → 실지원 40,600명)
23	입양아동가족지원	4,763,661	3,790,762	972,899	20.42	○ 당초 입양아동가족지원 1,771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아동이 1,700명으로 감소
24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5,540,476	4,388,086	1,152,390	20.80	○ 국고보조사업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서 64개소 지원 예정이었으나, 실제 60개소 운영됨
2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483,800	2,838,695	645,105	18.52	○ 당초 1,200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아동 1,070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478,766	6,673,745	805,021	10.76	○ 생활인 574명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적은 518명 입소
27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20,942,000	16,481,879	4,460,121	21.30	○ 2015년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감소 ○ 11,555가구 ('16년, 전년대비 54% 감소) → 10,177가구 ('17년, 전년대비 12%감소)
28	한부모가족자녀교통비 등 지원	8,038,918	6,574,634	1,464,284	18.21	○ 2015년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감소 →11,555가구('16년,전년대비54%감소)→10,177가구('17년,전년대비12%감소)
29	반환금및기타(가족)	2,008,210	1,859,701	148,509	7.40	○ 집행잔액
30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300,000	-	300,000	100.00	○ 해당 사업은 의원발의 사업으로 '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기 추진중인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처리함
31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7,994,302	7,528,424	465,878	5.83	○ 센터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958백만 원 중 계약심사 절감액 447백만 원 발생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57백만 원 중 집행잔액 12백만 원 발생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개최회수 감소 및 서울글로벌센터 4층 교육장 시설 유지보수 입찰 가격 조정,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절감 7백만 원 발생

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1)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 사업임.
- 주요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과 보육사업안내 책자 인쇄·발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대체교사,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근무수당 지원,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지원(영아반 운영비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365일 열린어린이집 지원), 민간어린이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민간어린이집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 현장학습비를 지원함.
- 동 사업의 2017회계연도 당초예산액은 1,392억 3,287만 원, 예산현액은 1,389억 4,228만 원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운데 2억 9,059만 원을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함. 예산현액 중 집행액은 총 1,389억 3,953만 원이며, 불용액은 275만 원으로 불용율은 0.00%로 나타남.

〈표 2-8〉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138,113,568	1,119,300	139,143,568	△290,588	138,942,280	138,939,532	2,748	0.00
사무관리비	51,100	0	0	0	51,100	50,850	250	0.49
공공운영비	25,600	0	0	0	25,600	23,722	1,878	7.3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0	0	0	0	12,600	12,600	0	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024,268	1,119,300	4,101,328	△290,588	138,852,980	138,852,360	620	0.00

- 동 사업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1건의 전용 사례가 있었음. 전용사유는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의무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시비부담분 2억 9,059만 원을 감전용하여 집행한 것임.

〈표 2-9〉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2017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통계목	예산 변경사용			예산변경 사유
			감액	증액	날짜	
1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290,588		2017-10-13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290,588		

나)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결산 불가능한 문제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은 1,389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나 99.9%의 예산이 자치구에 내려가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용율은 275만 원(불용율 0.0%)으로, 예산규모와 견주어 볼 때도, 타 사업의 불용율과도 비교해 볼 때도 그 불용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결산상 숫자로만 보면 집행을 100%에 가까운 완벽한 사업이라 할 것임.
- 금번 전용 건은 타 사업인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 사업에서 자치구로 지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일부 전용한 건인데, 해당 2억 9,059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재공인 탈락으로 인해 인건비에 여유가 예상된 노원구에 지급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임.
- 여기서, 통계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결산서상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해당 금액을 내려 보내는 순간 집행액 100%의 완벽한 집행 실적을 갖게 됨.
- 그런데, 실제 동 사업비에 대한 자치구별 정산자료인 반납고지 금액은 다음연도 5월경이나 되어야 집계되고, 아래 <표 2-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납고지액은 168억 원에 이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약 11.49%가량이 반환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만함.
- 이렇게 청구된 반환금은 다음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일괄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 내역과 정산 내역에 대한 흐름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한 구조라 할 것임.

〈표 2-1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2016년도 자치구별 반납고지 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146,401,501	129,585,463	16,816,038
종로구	1,535,986	1,388,148	147,839
중구	1,462,353	1,247,921	214,432
용산구	1,939,279	1,627,132	312,148
성동구	3,255,507	2,715,765	539,742
광진구	5,613,165	5,014,178	598,988
동대문구	5,547,114	4,481,619	1,065,495
종량구	8,225,864	7,538,003	687,862
성북구	7,792,961	6,652,966	1,139,995
강북구	6,547,650	6,278,502	269,148
도봉구	9,072,344	8,273,476	798,869
노원구	10,696,581	9,729,510	967,071
은평구	9,029,245	8,935,730	93,516
서대문구	3,337,322	2,945,783	391,540
마포구	4,379,308	4,301,170	78,139
양천구	7,278,675	6,156,657	1,122,019
강서구	8,840,106	7,674,186	1,165,921
구로구	8,735,531	7,956,988	778,544
금천구	5,087,877	4,633,530	454,348
영등포구	4,425,722	3,721,606	704,117
동작구	4,032,707	3,466,110	566,597
관악구	7,458,987	6,143,677	1,315,310
서초구	3,166,572	2,639,978	526,595
강남구	4,188,245	3,513,752	674,494
송파구	8,407,455	7,035,644	1,371,811
강동구	6,344,945	5,513,448	831,498

- 따라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구별 소요예산이나 필요예산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구조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예산규모(2017년기준, 1,392억 원)는 타 사업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 큰 규모의 예산을 구성하는 예산 통계목은 오로지 4개(①사무관리비, ②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③공공운영비, ④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만 구성되어 있고,
-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표 2-11>의 음영부문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등의 총 10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음.

<표 2-11>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	결산	비고 (예산변경사항 등)	예산	결산	비고
계	146,659,051			138,942,280	138,939,532	
①사무관리비	220,550	169,450		51,100	50,850	
②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2,600	12,600	
③공공운영비	23,000			25,600	23,722	

④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6,401,501	146,401,501	-169,450 전용	138,852,980	138,852,360	-290,588 전용
보육교직원인건비	40,504,780	40,504,780		39,683,898	39,683,578	
대체교사 인건비	876,817	876,817		1,197,768	1,197,768	
처우개선비	38,642,510	38,642,510		37,411,680	37,411,680	
종교시설 인건비	220,514	220,514		225,648	225,648	
시간연장 근무수당 등	686,819	686,819		768,720	768,400	
365 열린어린이집	78,120	78,120		80,082	80,082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		-	-	
시설운영비 지원	15,013,924	15,013,924		15,060,082	15,060,082	
영아반 운영비	12,166,574	12,166,574		12,158,000	12,158,000	
보육교사 중식비	2,579,100	2,579,100		2,646,000	2,646,000	
보수교육 중식비	176,000	176,000		176,000	176,000	
365 열린어린이집	92,250	92,250		80,082	80,082	
보육료차액지원(저소득)	741,330	741,330		712,420	712,420	
보육료차액지원(일반)	9,510,688	9,510,688		11,270,384	11,270,384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466,000	466,000		474,000	474,000	
천기저귀 지원	690,380	690,380		-	-	사업종료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79,474,399	79,474,399		70,335,978	70,613,978	
공기청정기 지원				1,119,300	1,119,000	
다문화 통합				97,000	97,000	
재능기부				180,000	180,000	

-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액 1,389억 원)’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 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유일한 통계목으로만 하위 사업들을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이 경우 실제 예산 변경이 생기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구조임.
- 각 하위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예산서상에 세부항목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포괄예산처럼 사용되어지는 문제의 개연성을 없애고,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과목을 간명하고 단순하게 분리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요구됨.

라) ‘서울형어린이집지원’ 등 주요 세부사업 별도 예산사업으로 분리 필요

- 복잡한 예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테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경우, 703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으며, 사업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도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방법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분류된 세부항목들 각각(예. 보육교직원인건비, 시설운영비, 보육료차액지원 등)을 독립적인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짐.

- 그 밖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육담당관 소관 자문위원회 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과 보육담당관의 시책추진비인 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및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동 예산사업의 목적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는 바,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액 시비 사업임.
- 구체적으로는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분기별 8만6천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자녀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50%를 지원(50%는 교육청 지원)하는 내용임.

〈표 2-12〉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8,200,000	△146,082	△15,000	8,038,918	6,574,634	1,464,284	18.21
사회보장 적수혜금	8,200,000	△146,082	△15,000	8,038,918	6,574,634	1,464,284	18.21

- 동 사업의 2017회계연도 당초예산액은 82억 원으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1억 6,108만 원을 감액 조정(2건)하여 예산현액은 80억 3,892만 원이고, 이 중 65억 7,463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억 6,428만 원은 불용 처리하여, 불용율은 18.21%로 나타남.

나) 1억 6천만 원을 감액조정하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불용액 14억 6천만 원 발생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의 2017년 불용액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인 14억 6,428만 원으로, 불용율(18.21%)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불용규모는 타 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전용과 변경으로 1억 6,108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에 비해 7억 2,474만 원의 예산현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 불용액이 5억 2,090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2-13〉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단위 : 천 원, %)

연 도	예 산 액	예 산 변 경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차 년 이 월	집 행 잔 액	불 용 율
2017	(x-) 8,200,000	(x-) -161,082	(x-) 8,038,918	(x-) 6,574,634	(x-) 0	(x-) 1,464,284	18.21
2016	(x-) 8,763,654	(x-) 0	(x-) 8,763,654	(x-) 7,820,173	(x-) 0	(x-) 943,481	10.77

('17-'16)	(x-) △563,654	(x-) △161,082	(x-) △724,736	(x-) △1,245,539	(x-) 0	(x-) 520,803	7.44
2015	(x-) 16,570,248	(x-) -754,165	(x-) 15,816,083	(x-) 14,410,370	(x-) 0	(x-) 1,405,713	8.89
2014	(x-) 17,382,528	(x-) 0	(x-) 16,483,968	(x-) 16,209,258	(x-) 0	(x-) 274,710	1.67
2013	(x-) 17,883,528	(x-) -709,000	(x-) 17,174,528	(x-) 16,436,215	(x-) 0	(x-) 738,313	4.30

- 게다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여, 매해 결산 시마다 주요하게 지적되어 왔음.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빈번한 예산변경 문제와 지속적 불용발생 및 실수요 예측 미흡

- 동 사업은 2017년 2건의 예산감액 조정 외에도, 2016년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 및 동일 사업 내 통계목간 예산조정(전용: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비), 2015년에 타 사업을 위해 4차례의 감액변경이 있었음. 이처럼 단일 사업내에서 반복적으로 잦은 예산변경 사례가 발생한 바, 사업 예산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더욱이, 매해 추경이나 예산변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설계상 미흡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고착된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14〉 2015~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통계목	예산 전용			예산 변경사용			추경		
			감액	증액	날짜	감액	증액	날짜	감액	증액	날짜
2017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6,082	-	12-01	-	-	-	-	-	-
	아이 돌보미사업 운영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	146,082	12-01	-	-	-	-	-	-
2017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	-	-	15,000	-	12-12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	-	-	-	15,000	12-12	-	-	-
	소계		146,082			15,000					
201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00	-	9-30	-	-	-	-	-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무관리비	-	90,000	9-30	-	-	-	-	-	-
201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	-	-	-	-	-	-	6,300,000	-	-
	소계		90,000						6,300,000		
2015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80	-	09-03	-	-	-	-	-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3,480	09-03	-	-	-	-	-	-
2015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2,519	-	10-28	-	-	-	-	-	-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	22,519	10-28	-	-	-	-	-	-
2015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	-	-	28,166	-	10-28	-	-	-
	가족역량강화지 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	-	-	-	28,166	10-28	-	-	-
2015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000	-	12-02	-	-	-	-	-	-
	가족통합지원센 터 건립	자치단체자 본보조	-	700,000	12-02	-	-	-	-	-	-
	소계		725,999			28,166					

-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업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용 등의 제도가 활용될 것이나, 이는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동 사업과 같이 특정 사업에서 여러 번의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설계의 미흡함에서 연유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덧붙여, 동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그 자녀들에 대하여 교통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과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불용액과 불용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추계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이 기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하면서 그 지원기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예산편성방식 보다는 제로섬 방식 등을 적용하여, 수요자에 대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산정해 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세부사업 가운데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수당 지원 등’은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따른 국비매칭(국시비=4:6) 사업이며,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고등학생)’ 지원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됨.
- 동 사업의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7억 6,366만 원으로, 이 가운데 37억 9,07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 7,290만 원은 불용(불용율 20.42%)된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입양아동가족지원	4,763,661	3,790,762	972,899	20.42
사회보장적수혜금	4,763,661	3,790,762	972,899	20.42

나) 입양아동 지속적 감소와 불용액 과다 문제에 따른 예산운영 개선 필요

- 2011년 이후 입양가족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당시 28억 원이던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최대 51억 원에 이르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약 1.8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7년 예산의 경우 그동안의 예산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던 추세와는

다르게 전년대비 6억 9,413만 원 가량이 감소한 바, 이는 2014년부터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로 감액한 것임.

〈표 2-16〉 연도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집행	불용	불용율(%)
2017	4,763,661		4,763,661	3,790,762	972,899	20.42
2016	5,116,810	△531,000	4,585,810	3,894,117	691,693	15.08
2015	5,810,942		5,810,942	3,824,454	1,986,488	34.19
2014	5,400,633	△18,000	5,382,633	4,035,314	1,347,319	25.03
2013	4,262,835	-	4,262,835	3,876,891	385,944	9.05
2012	3,912,565		3,912,565	3,549,873	392,692	10.04
2011	2,768,826	156,829	2,925,655	2,875,325	50,330	1.72

- 하지만, 이러한 예산 감액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결산기준 불용액은 전년에 비해 2억 8,121만원이 늘어난 총 9억 7,290만 원으로, 20.42%의 불용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매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데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2011년 전 부개정 되면서 가정법원 허가제와 양부모 자격이 강화됨으로써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입양사례가 급감한데 따른 것임.
- 이처럼 입양사례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예산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비내시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양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017년에도 같은 예산의 불용액 과다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2017년 예산심의 당시 이미 예상한 바 있음.

〈표 2-17〉 연도별 입양 아동수

(단위 : 명, %)

구분	계	2007년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47,343 (100.0)	230,635 (100.0)	2,556 (100.0)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1,057 (100.0)	880 (100.0)	863 (100.0)
국내	80,099 (32.4)	70,327 (30.2)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국외	167,244 (67.6)	160,308 (69.8)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다)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

-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취지는 보호가자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상 입양가족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법 개정 이후 입양가정은 당분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인원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예산편성 철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4)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여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여성안심택배 사업,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구축, 데이트폭력 방지대책 추진,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여성 등 재난약자용 대응 매뉴얼 제작 등임.
- 동 사업의 2017회계연도 당초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억 6,789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9,840만 원 전액을 전산개발비에 증액 전용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5,200만 원 전액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예산현액 가운데 12억 7,918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03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사고이월)하고, 나머지 9,838만 원은 불용하여, 불용율은 4.76%로 기록됨.

〈표 2-18〉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 율(%)
계	2,067,886	0	0	2,067,886	1,279,189	690,321	98,376	4.76
사무관리비	557,600	0	0	557,600	553,159	0	4,441	0.80
전산 개발비	149,886	598,400	0	748,286	0	690,321	57,965	7.75
민간경상 사업보조	360,000	0	0	360,000	360,000	0	0	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50,000	0	0	50,000	50,000	0	0	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98,400	-598,400	0	0	0	0	0	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352,000	0	-352,000	0	0	0	0	0.00
자산및물 품취득비	0	0	352,000	352,000	316,030		35,970	10.22

나)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변경과 사고이월 발생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중 예산변경이 발생한 세부 사업명은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사업’으로, 최초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5760, 2016.3.30.)에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치구별 집행을 하려던 것¹⁾을, 서울시 직접 수행으로 전 자치구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확대(안), 여성정책담당관-12771, 2017.7.6.)한 것임.

1) 16년 4개 자치구→17년 10개 자치구→18년 11개 자치구 안심망 구축

- 2017년 5월 4개 자치구(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심이」가 처음 개통된 이후, 자치구 개별 구축보다는 서울시 통합 구축이 비용 효율성면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유리하고, 순차적 확대시 위치기반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전자지구 일괄구축·전면 확대로 추진하고자 한 것임.

○ 이러한 갑작스런 사업 확장에 따른 계획변경은 예산 전용 및 변경으로 이어지고, 예산 지출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는 원인이 되었음.

〈표 2-19〉 2015~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통계목	예산 전용			예산 변경사용		
			감액	증액	날짜	감액	증액	날짜
2017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8,400		07-13	-	-	-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598,400	07-13	-	-	-
2017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52,000		07-13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52,000	07-13
	소계		598,400			352,000		
201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46,026		07-11	-	-	-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46,026	07-11	-	-	-
201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14,941		07-11	-	-	-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314,941	07-11	-	-	-
2016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07-11	-	-	-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7-11	-	-	-
	소계			560,967		-	-	-

다) 반복되는 당초 미편성 예산항목 신설·집행, 의회심의 무력화 문제

- 예산변경 건의 경우, 자치구에 연계서버 및 통합위협관리시스템을 위한 자본보조에서 서울시 직접 수행에 따라 2017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건임.
 - 2016회계연도에도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 사업(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전용하여,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라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고 집행한 바 있음.
-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은 지난 2013년 1.0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2.0사업, 2017년 3.0까지 시리즈로 이어지는 서울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음. 그런 만큼 계획성 있는 준비와 이에 따른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하지만, 당초에 필요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계획과 예산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안심이」 사업과 같이 전산개발(앱개발) 비용에 드는 예산은 면밀한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그 특성상 본예산 편성과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라) 안심이 시범사업, 긴급호출 서비스 일 2.12건에 그쳐

- 지난 제278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2017년 5월 4개 자치구 안심이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간('17. 5 ~ '18. 5월)

앱 다운로드 12,644회, 회원가입 260건, 이용실적 4,596건임(안심귀가 3,253건, 스카우트 568건, 긴급호출 775건).

- 안심이 앱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에 기재된 회원가입 260건은 이탈자로 실제로는 3,130건이라고 정정을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경우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안심이 앱의 핵심서비스는 긴급호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간 실적은 총 775건으로 4개 자치구에서 하루에 2.12건의 긴급호출 서비스가 이용되는데 그치고 있음.
- 앞으로 안심이 구축 사업 전면시행 시, 이용자 수나 이용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낮은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바, 앞으로 안심이 구축 사업의 비용대비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5)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다문화자녀 등 차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및 꿈과 끼를 키우는 재능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이질적 문화해소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서울시 서남권 등 외국인다문화자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만9~24세 미만 외국인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문화교류활동, 국제시민교육, 지역봉사활동, 진로탐색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2-20〉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계	300,000	0	300,000	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0	300,000	100.00

나) 신규사업으로 유일한 100% 불용 건

- 동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전액 불용되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유일한 불용율 100% 사업임.
- 동 사업의 불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 내용이 기 추진중인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처리”하였다는 의견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앞으로 대책을 밝혔음.
 - 그러나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보고(외국인다문화담당관-7572)에 따르면, 집행부 불용해명과는 달리,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지적은 없었음.
 - 자문회의는 공모 방법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고려할 것과, 다문화가족의 자발적 참여 사회통합 등 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결과로 확인됨.
 - 집행부는 같은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死藏)시켰다고 하겠음.

다) 불용 역시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며, 의회심의 무력화 문제

- 상기의 예산 불용 건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동의 하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양태라고 하겠음.
- 집행부는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사업에 대해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사업은 집행부내 자문회의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명확한 불용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부작위에 대한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집행의지가 없어서 업무를 지연하고 사업예산을 불용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엄정한 질책과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할 것임.

6)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시설이용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7조의2(양육수당)²⁾에 따라 의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국비보조사업임(보조율: 국비45%, 시비 38.5%, 구비 16.5%).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지원대상으로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표 2-21>과 같음.

<표 2-21> 2017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35개월	10만 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 동 사업의 2017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2,996억 4,439만 원으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149억 1,868만 원을 감액 조정(2건)한 예산현액은 2,847억 2,571만 원이고, 지출액은 2,630억 290만 원을 사용하여 불용율은 7.63% (불용액 217억 2,281만 원)로 기록됨.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299,644,389		△14,918,677	284,725,712	263,002,900	21,722,812	7.6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9,644,389		△14,918,677	284,725,712	263,002,900	21,722,812	7.63

나) 다른 사업을 위한 149억 원 감변경하고도, 불용액 217억 발생

- 2017회계연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①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사업과 ②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50억 4,537만 원과 98억 7,331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7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표 2-23〉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세부사유
			감액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9,644,389	5,045,367		2017-11-30	국고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추가 확보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1,597,438		5,045,367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4,599,022	9,873,310		2017-12-11	국고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가확보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세부사유
			감액	증액		
영유아보육료(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8,425,478		9,873,310		

-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통하여 보육사업비의 시비 추가 부담분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동 사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된 점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아동 수 예측 및 예산 규모 산출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추계가 반드시 필요함.

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기계적인 시비편성으로 인해 반복적 불용발생

- 집행부에서는 불용사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내시공문(2017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제1차 변경내시 통보, 보육담당관-21650, 2017.10.19.)에 따라 국고가 감액되어 집행잔액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으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표 2-24〉 불용 현황 및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단위 : 천 원)

년도	불용액	불용률 (%)	불용상세사유	향후대책
2016	11,545,545	3.83	보건복지부 국고 감액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017년 사업비 편성에 반영
2017	21,722,812	7.60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옴에 따라 감액 내시공문이 국고가 감액되어 집행잔액 발생	2018년 사업비 편성에 반영

- 그러나 2016년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국비 감액분에 맞춘 시비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추경안으로 96억 3,404만 원을 감액한 3,013억 8,304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115억 4,55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집행부는 불용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2016년 115억 원의 불용발생 이후, 개선의 여지 없이 2017년에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217억 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시비편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라) 발생이 예상되는 불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작년에 이어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합계가 332억 6,836만 원에 달하는 등 한 사업에서 반복되고 확대되는 예산불용은 관례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 발생에 따른 효율적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되는 바, 서울시의 예산집행 방식을 중앙정부와 공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아동 수 예측 및 예산 규모 결정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재원은 국비와 시비가 50:50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국비보조 사업임.
- 동 사업의 2017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09억 4,2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164억 8,18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44억 6,012만 원은 불용처리된 바, 불용율을 21.3%로 기록함.

〈표 2-2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20,942,000			20,942,000	16,481,879	4,460,121	21.30
사회보장 적수혜금	20,942,000			20,942,000	16,481,879	4,460,121	21.30

나) 연례적으로 불용(불용액, 불용율) 과다, 매년 증가 추세

- 동 사업의 불용액은 44억 6,012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며, 21.3%에 이르는 불용율 또한 타사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것임.

- 이처럼 특정 사업에서의 불용액이 크다는 것은, 이로 인해 해당 불용액만큼 여타의 다른 사업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더욱이,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7억 4,480만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14억 8,138만 원, 2016년에는 36억 365만 원, 2017년에는 44억 6,012만 원으로 매년 점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의 불용비율도 연도별로 각각 6.1%, 9.1%, 21.9%로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처럼 매년 불용액과 불용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예산액은 전년도 불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연도별 결산조사서

(단위 : 천 원)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불용사유	향후대책
2014	12,200,240	11,455,432	744,808	6.10	예산인원 대비 지원인원 감소	불용 최소화를 위해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철저
2015	16,143,800	14,662,421	1,481,379	9.18	계획인원대비 지원인원 감소(아동양육비: 계획 13,116명/실지원 11,114명)	실제인원수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
2016	16,400,000	12,796,355	3,603,645	21.97	맞춤형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시행으로 저소득한부모 감소	실수요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
2017	20,942,000	16,481,879	4,460,121	21.30	2015년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 감소 →11,555가구('16년, 전년대비 54% 감소) → 10,177가구('17년, 전년대비 12% 감소)	저소득한부모 대상자 추이를 반영한 예산 확보 노력

다) 예산운용 추이 반영하지 않은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문제

- 특히, 2016년 불용액이 21.97%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7.5%가 증가('16년 164억 원 ⇒ 209억 원)했음.
- 이는 아래 <표 2-27>에서 볼 수 있듯이, 예컨대 ‘아동양육비’ 대상자 수가 2016년 기준 12,400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3,519명으로 1,11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이는 그동안의 예산운용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의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며, 뒤에서 언급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정책 흐름도 반영하지 못한 사례라 할 것임.

<표 2-2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2016~2017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아동양육비	13,519명*120,000원*12개월	19,467,000	13,519명*120,000원*12개월	19,467,000
추가아동양육비	475명*50,000명*12개월	285,000	475명*50,000명*12개월	285,000
학용품비	22,900명*50,000원*1회	1,145,000	22,900명*50,000원*1회	1,145,000
생활보조금	75명*50,000원*12개월	45,000	75명*50,000원*12개월	45,000
합계	-	20,942,200 0	-	20,942,200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제도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미반영 문제

- 서울시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불용 사유에 대하여 “맞춤형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 감소”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된 것으로,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변경 추계는 이미 2017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
- 이처럼 상위 관계법령 변경사항이 예산에 긴밀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은 소극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 사례라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불용에 대한 향후대'으로 “실수요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던가, “저소득한부모 대상자 추이를 반영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던 바, 동 사업에 대한 몇 개년간의 전반적 운용현황을 고려해볼 때 실제적인 개선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물론, 같은 사업의 경우 국·시비 매칭(5:5)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매년 크게 발생하는 사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미흡한 예산추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정 정도 감안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보더라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초 수요자료를 서울시에서 제공한다는 점,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노력을 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동안의 예산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중앙부처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건의와 논의를 취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불용되는 예산(2017년 기준 44억 6,012만 원, 4년간 총 102억 8,996만 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할 것인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유의가 요구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1종이 운영 중임. 동 기금의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조성액 총액은 241억 3,469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240억 8,614만 원)에서 2017회계연도에 9억 6,320만 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이 가운데 9억 1,466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것임.

〈표 3-1〉 2017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조성 총괄표

(단위 : 천 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7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24,086,144	48,543	963,203	914,660	24,134,687
성평등 기금	24,086,144	48,543	963,203	914,660	24,134,687

- 2017회계연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의 주요 원천은 ‘전입금(52.2%)’과 ‘이자수입(31.6%)’, 그리고 ‘예치금회수(16.2%)’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78.26%)’ 과 ‘예치금(20.56%)’ 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2017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

(단위 : 천 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1,149,347	100.00	계	1,149,347	100.00
전입금	600,000	52.20	고유목적사업비	899,475	78.26
융자회수	-	-	기본경비	15,185	1.32
예탁금상환금	-	-			
예치금회수	186,144	16.20	예치금	234,687	20.42
이자수입	363,203	31.60	예탁금	-	-
기타수입	-	-			

나.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 운용의 적합성 문제 및 재원확보의 한계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용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2017년 한 해 동안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총 54개 단체(사업)에 총 8억 4,340만 원을 지원함.
- 이런 점에서 동 기금이 갖는 상징성은 일정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하나, 앞서 <표 3-2>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52.20%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전입금으로 기금이라는 예산운용방식을 빌어 해당 고유목적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재원조달방식은 기금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 및 사업 수행에 내실화가 필요함.

2) 예치금 과다의 문제 개선 필요

-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용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

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최근 5개년 동안의 성평등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유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예치·예탁금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치·예탁금의 최근 5개년 평균 비율이 전체 기금지출액의 23.56%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고유목적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3-3〉 최근 3년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 내역

(단위 : 천 원)

기금	지출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3	1,221,213	803,796	65.82%	45,966	3.76%	371,451	30.42%
2014	1,506,684	1,136,807	75.45%	41,490	2.75%	328,387	21.80%
2015	843,910	598,287	70.89%	40,637	4.82%	204,986	24.29%
2016	905,214	676,102	74.69%	42,968	4.75%	186,144	20.56%
2017	1,149,346	899,475	78.26%	15,184	1.32%	234,687	20.42%
평균	1,125,273	822,893	73.13%	37,249	3.31%	265,131	23.56%